

부산광역시체육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 기

2021년 05월 18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신우회계법인

목 차

| | 페이지 |
|----------------------|---------|
| |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4 |
| 재 무 제 표 | 5 |
| · 재 무 상 태 표 | 6 - 7 |
| · 운 영 성 과 표 | 8 |
| · 주 석 | 9 - 26 |
| 세입세출결산총괄표 | 27 |
| 외부감사 실시내용 | 28 - 29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의원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체육회의 재무제표는 체육회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 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체육회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체육회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체육회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체육회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회계처리기준과 보고서의 배포 및 이용제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체육회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상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보고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해당 재무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5

신 우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한 상 우

2023년 4월 2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체육회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부산광역시체육회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 기

2021년 05월 18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체육회가 작성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77

(전 화) 051-500-7900

재무상태표

제 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단위 : 원)

| 과목 | 제2(당)기 | | | 제1(전)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자 산 | | | | | | |
| I. 유동자산 | 2,353,084,250 | 2,187,521,720 | 165,562,530 | 3,629,127,798 | 3,544,878,121 | 104,375,111 |
| (1) 당좌자산 | 2,353,084,250 | 2,187,521,720 | 165,562,530 | 3,629,127,798 | 3,544,878,121 | 104,375,11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40,127,229 | 1,734,763,959 | 105,363,270 | 3,079,938,919 | 2,996,115,758 | 83,823,161 |
| 단기투자자산(주식3,4) | 406,734,911 | 406,734,911 | - | 548,677,883 | 548,677,883 | - |
| 매출채권 | 45,520,400 | - | 45,520,400 | 426,516 | - | 426,516 |
| 단기대여금(주식15) | - | - | - | - | - | 20,125,434 |
| 미수금 | 41,097,500 | 41,097,500 | - | - | - | - |
| 미수수익 | 4,925,350 | 4,925,350 | - | - | - | - |
| 부가세대급금 | 14,678,860 | - | 14,678,860 | - | - | - |
| 선납세금 | - | - | - | 84,480 | 84,480 | - |
| II. 비유동자산 | 5,004,188,689 | 5,134,151,568 | 12,035,105 | 5,244,019,126 | 5,372,103,720 | 13,913,390 |
| (1) 투자자산 | 108,701,543 | 108,701,543 | - | 249,417,119 | 249,417,119 | - |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식7) | 108,701,543 | 108,701,543 | - | 249,417,119 | 249,417,119 | - |
| (2) 유형자산(주식5) | 4,018,487,146 | 4,006,452,041 | 12,035,105 | 4,117,602,007 | 4,103,688,617 | 13,913,390 |
| 토지 | 3,447,674,000 | 3,447,674,000 | - | 3,447,674,000 | 3,447,674,000 | - |
| 차량운반구 | 34,101,500 | 34,101,500 | - | 34,101,500 | 34,101,500 | - |
| 감가상각누계액 | (6,507,055) | (6,507,055) | - | (2,602,821) | (2,602,821) | - |
| 비품 | 700,131,168 | 684,966,009 | 15,165,159 | 700,131,168 | 684,966,009 | 15,165,159 |
| 감가상각누계액 | (156,912,467) | (153,782,413) | (3,130,054) | (61,701,840) | (60,450,071) | (1,251,769) |
| (3) 기타비유동자산 | 877,000,000 | 1,018,997,984 | - | 877,000,000 | 1,018,997,984 | - |
| 임차보증금 | 877,000,000 | 877,000,000 | - | 877,000,000 | 877,000,000 | - |
| 수익사업출연금(주식6,15) | - | 141,997,984 | - | - | 141,997,984 | - |
| 자 산 총 계 | 7,357,272,939 | 7,321,673,288 | 177,597,635 | 8,873,146,924 | 8,916,981,841 | 118,288,501 |
| 부 채 | | | | | | |
| I. 유동부채 | 1,881,107,310 | 1,874,601,650 | 6,505,660 | 3,528,429,332 | 3,543,416,316 | 5,138,450 |
| 매입채무 | - | - | - | 377,140 | - | 377,140 |
| 미지급금 | - | - | - | 301,400 | 301,400 | - |
| 예수금 | 10,583,910 | 10,583,910 | - | 11,661,210 | 11,661,210 | - |
| 단기차입금(주식15) | - | - | - | - | 20,125,434 | - |
| 부가세예수금 | - | - | - | 1,755,510 | - | 1,755,510 |
| 예수보증금 | 2,840,000 | - | 2,840,000 | 2,860,000 | - | 2,860,000 |
| 선수금 | 50,000 | 50,000 | - | 145,800 | - | 145,800 |
| 미지급비용 | 6,449,486 | 6,449,486 | - | 238,731,696 | 238,731,696 | - |
| 당기법인세부채 | 3,665,660 | - | 3,665,660 | - | - | - |
| 하자보수충당금(주식8) | 109,455,838 | 109,455,838 | - | 246,628,153 | 246,628,153 | - |
| 반납예정보조금(주식12) | 1,543,564,605 | 1,543,564,605 | - | 2,823,918,693 | 2,823,918,693 | - |
| 공익목적충당금(주식9) | 204,497,811 | 204,497,811 | - | 202,049,730 | 202,049,730 | - |
| II. 비유동부채 |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식7) | 2,460,955,980 | 2,460,955,980 | - | 2,391,565,180 | 2,391,565,180 | - |

| 과 목 | 제2(당)기 | | | 제1(전)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식7) | (2,460,955,980) | (2,460,955,980) | - | (2,391,565,180) | (2,391,565,180) | - |
| 부 채 총 계 | 1,881,107,310 | 1,874,601,650 | 6,505,660 | 3,528,429,332 | 3,543,416,316 | 5,138,450 |
| 순 자 산 | | | | | | |
| I 기본순자산(주식11) | 5,855,779,093 | 5,855,779,093 | 141,997,984 | 5,855,779,093 | 5,855,779,093 | 141,997,984 |
| 기본재산 | 3,547,674,000 | 3,547,674,000 | - | 3,547,674,000 | 3,547,674,000 | - |
| 보통재산(주식15) | 2,308,105,093 | 2,308,105,093 | 141,997,984 | 2,308,105,093 | 2,308,105,093 | 141,997,984 |
| II 보통순자산(주식11) | (379,613,464) | (408,707,455) | 29,093,991 | (511,061,501) | (482,213,568) | (28,847,933) |
| 잉여금 | (379,613,464) | (408,707,455) | 29,093,991 | (511,061,501) | (482,213,568) | (28,847,933) |
| 순 자 산 총 계 | 5,476,165,629 | 5,447,071,638 | 171,091,975 | 5,344,717,592 | 5,373,565,525 | 113,150,051 |
|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 7,357,272,939 | 7,321,673,288 | 177,597,635 | 8,873,146,924 | 8,916,981,841 | 118,288,501 |

"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21년 05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 | 제1(전)기 | | |
|---------------------|--------------------|----------------|--------------------|----------------|----------------|--------------|
|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I 사업수익 | 31,510,345,209 | 30,900,828,633 | 609,516,576 | 16,505,742,908 | 16,327,118,995 | 178,623,913 |
| (1) 기부금수익(주석12) | 944,144,701 | 944,144,701 | - | 300,000,000 | 300,000,000 | - |
| (2) 시비보조금수익(주석12) | 25,164,973,671 | 25,164,973,671 | - | 13,959,654,587 | 13,959,654,587 | - |
| (3) 국비보조금수익(주석12) | 4,773,635,261 | 4,773,635,261 | - | 2,053,556,584 | 2,053,556,584 | - |
| (4) 회비수익 | 18,075,000 | 18,075,000 | - | 13,907,824 | 13,907,824 | - |
| (5) 자체수익 | 609,516,576 | - | 609,516,576 | 178,623,913 | - | 178,623,913 |
| 기타수익 | 20,000,000 | - | 20,000,000 | 10,000,000 | - | 10,000,000 |
| 헬스장수익 | 179,641,369 | - | 179,641,369 | 110,160,122 | - | 110,160,122 |
| 훈련장수익 | 144,751,000 | - | 144,751,000 | - | - | - |
| 대관수익 | 85,354,511 | - | 85,354,511 | 9,949,796 | - | 9,949,796 |
| 주차수익 | 31,802,096 | - | 31,802,096 | 13,692,105 | - | 13,692,105 |
| 생활체육교실수익 | 147,967,600 | - | 147,967,600 | 34,821,890 | - | 34,821,890 |
| II 사업비용(주석13) | 31,495,030,008 | 30,947,058,310 | 547,971,698 | 17,031,117,639 | 16,824,201,554 | 206,916,085 |
| (1) 사업수행비용 | 28,587,821,209 | 28,039,849,511 | 547,971,698 | 15,219,539,839 | 15,012,623,754 | 206,916,085 |
| 분배비용 | 7,270,415,773 | 7,270,415,773 | - | 3,146,264,795 | 3,146,264,795 | - |
| 인력비용 | 14,381,166,251 | 14,105,017,881 | 276,148,370 | 9,233,080,044 | 9,130,638,244 | 102,441,800 |
| 시설비용 | 930,491,605 | 848,007,490 | 82,484,115 | 461,545,940 | 402,958,900 | 58,587,040 |
| 기타비용 | 6,005,747,580 | 5,816,408,367 | 189,339,213 | 2,378,649,060 | 2,332,761,815 | 45,887,245 |
| (2) 일반관리비용 | 2,907,208,799 | 2,907,208,799 | - | 1,811,577,800 | 1,811,577,800 | - |
| 인력비용 | 2,585,819,429 | 2,585,819,429 | - | 1,631,171,728 | 1,631,171,728 | - |
| 시설비용 | 8,756,650 | 8,756,650 | - | 5,245,212 | 5,245,212 | - |
| 기타비용 | 312,632,720 | 312,632,720 | - | 175,160,860 | 175,160,860 | - |
| III 사업이익(손실) | 15,315,201 | (46,229,677) | 61,544,878 | (525,374,731) | (497,082,559) | (28,292,172) |
| IV 사업외수익 | 124,097,141 | 124,034,425 | 62,716 | 14,877,825 | 14,869,032 | 8,793 |
| 이자수익 | 39,291,566 | 39,278,327 | 13,239 | 12,719,579 | 12,711,843 | 7,736 |
| 잡이익 | 84,805,575 | 84,756,098 | 49,477 | 2,158,246 | 2,157,189 | 1,057 |
| V 사업외비용 | 4,298,645 | 4,298,635 | 10 | 564,595 | 41 | 564,554 |
| 잡손실 | 4,298,645 | 4,298,635 | 10 | 564,595 | 41 | 564,554 |
| VI 법인세차감전당기운영이익(손실) | 135,113,697 | 73,506,113 | 61,607,584 | (511,061,501) | (482,213,568) | (28,847,933) |
| VII 법인세비용(주석14) | 3,665,660 | - | 3,665,660 | - | - | - |
| VIII 당기운영이익(손실) | 131,448,037 | 73,506,113 | 57,941,924 | (511,061,501) | (482,213,568) | (28,847,933) |

"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1.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개요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구)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21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8일 법인전환된 비영리 체육단체로서 (구)부산광역시체육회의 예산 및 자산 등을 승계하였습니다. 영문으로는 Busan Sports Council(약칭 BSC)입니다. 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 대표일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장은 장인화입니다.

체육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나. 부산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다.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 라. 부산시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 마. 부산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 바.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사. 부산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아. 부산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자. 부산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차. 부산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카.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타. 그 밖에 부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중요한 회계정책

체육회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합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양도의 경우에, 체육회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육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육회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추정내용연수는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계 정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차 량 운 반 구 | 8,9년 | 정 액 법 |
| 비 품 | 5~12년 | " |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기준 제26조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보아 실제 받는 시점에 사업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체육회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

1)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수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의 수익은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및 기타사업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며,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합니다.

(6) 퇴직급여충당부채

체육회는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확적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종업원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종업원은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순자산이라 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하며,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하며,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 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합니다.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8) 자산손상

금융자산, 재고자산,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및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

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운영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추정의 사용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및 충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중 임대료소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 처분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임의적립금에서 이입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설정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12)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사용제한 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금융기관 | 금 액 | | 비 고 |
|--------|---------|---------|---------|------|
| |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투자자산 | (주)부산은행 | 100,000 | 100,000 | 기본재산 |

4. 단기투자자산

당기말 현재 단기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금융기관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주)부산은행 | 2023.06.29 | 2.650% | 100,000 |
| (주)부산은행 | 2023.06.29 | 2.500% | 2,004 |
| (주)부산은행 | 2023.11.01 | 3.450% | 4,518 |
| (주)부산은행 | 2023.06.29 | 2.650% | 153,202 |
| (주)부산은행 | 2023.11.23 | 5.000% | 59,507 |
| (주)부산은행 | 2023.08.12 | 3.200% | 42,730 |
| (주)부산은행 | 2023.06.29 | 2.650% | 44,775 |
| 합계 | | | 406,735 |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3,447,674 | - | - | - | 3,447,674 |
| 차량운반구 | 31,499 | - | - | (3,904) | 27,594 |
| 비품 | 638,429 | - | - | (95,211) | 543,219 |
| 계 | 4,117,602 | - | - | (99,115) | 4,018,487 |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 | 3,447,674 | - | - | 3,447,674 |
| 차량운반구 | - | 34,102 | - | (2,603) | 31,499 |
| 비품 | - | 700,131 | - | (61,702) | 638,429 |
| 계 | - | 4,181,907 | - | (64,305) | 4,117,602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소재지 | 보유면적(m ²) | 당 기 | | 전 기 | |
|-------------|-----------------------|-----------|-----------|-----------|-----------|
| |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5,461 | 3,447,674 | 1,281,669 | 3,447,674 | 1,210,727 |

(3) 사용제한자산

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장부금액 3,447,674천원)는 당기말 현재 부산광역시승마협회에의해 점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가처분등

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석10 참조)

6. 수익사업출연금

수익사업출연금은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 기타사업부분에 출연한 자산으로 통합재무제표 작성시 기타사업부분의 보통재산과 상계됩니다(주석15 참조).

당기와 전기의 수익사업출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수익사업출연금 | 141,998 | - | - | 141,998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수익사업출연금 | - | 141,998 | - | 141,998 |

7. 퇴직급여충당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2,391,565 | - |
| 법인 전환승계액 | - | 2,376,851 |
| 충당부채설정액 | 124,666 | 259,639 |
| 퇴직금지급액 | (55,275) | (244,924) |
| 기말잔액 | 2,460,956 | 2,391,565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2,569,658 | 2,640,982 |

당기말 현재 퇴직금소요액을 초과하는 금액(약 104%)에 대하여 부산은행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 2,569,658천원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2,460,956천원을 초과하는 108,702천원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 초 금 액 | 2,640,982 | - |
| 당기증가액 | 226,442 | 2,640,982 |
| 당기감소액 | (297,766) | - |
| 기 말 금 액 | 2,569,658 | 2,640,982 |

(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정기예금 | 2,569,658 | 2,640,982 |

(4)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575,230 및 564,627천원입니다.

8. 하자보수충당금

체육회는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 따라 수익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특별회계 체육회관 기금으로 적립하고 하자보수충당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하자보수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 초 금 액 | 246,628 | - |
| 당기증가액 | 45,609 | 246,628 |
| 당기감소액 | (182,781) | - |
| 기 말 금 액 | 109,456 | 246,628 |

9. 공익목적충당금

체육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금을 공익목적충당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공익목적충당금의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체육진흥기금(주1) | 105,654 | 867 | - | 106,521 |
| 법인출연금(주2) | (100,000) | - | - | (100,000) |
| 선수지도자상해 및 사망보상기금 | 151,978 | 1,224 | - | 153,202 |
| 스포츠클럽기금 | 44,417 | 358 | - | 44,775 |
| 합계 | 202,049 | 2,449 | - | 204,498 |

(주1) 체육진흥기금에는 법인출연금 1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법인출연금은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11 참조)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체육진흥기금 | - | 105,654 | - | 105,654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법인출연금 | - | (100,000) | - | (100,000) |
| 선수지도자상해 및 사망보상기금 | - | 151,978 | - | 151,978 |
| 스포츠클럽기금 | - | 44,417 | - | 44,417 |
| 합계 | - | 202,049 | - | 202,049 |

1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관할법원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소송내역 | 소송가액 |
|--------|------------|-----|----------|--------------------|--------|
| 부산고등법원 | 2022나54392 | 정윤영 | 부산광역시체육회 | 핀수영지도자 임용 취소 무효 확인 | 55,000 |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체육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금융기관 | 금액 |
|------|---------|---------|
| 신용카드 | (주)부산은행 | 388,300 |

(3) 보험가입 내용

당기말 현재 보험가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험의 종류 | 보험금액 | 보험회사 |
|------------|------------|-----------|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 14,816,743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체육회는 상기 보험 이외에 자동차종합보험,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4)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증인 | 제공처 | 종류 | 금액 |
|-----------|-------------|--------|---------|
| 서울보증보험(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 지급보증 등 | 400,000 |

11. 순자산

(1)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과목 | 통합 | | | 공익목적사업부문 | | | 기타사업부문 | | |
|------------|-----------|-----------|-----------|-----------|-----------|-----------|--------|---------|----------|
| | 기본순자산 |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 | 보통순자산 |
|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잉여금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잉여금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잉여금 |
| 전 기 초 | - | - | - | - | - | - | - | - | - |
| 법인설립 | 3,547,674 | 2,308,105 | - | 3,547,674 | 2,308,105 | - | - | 141,998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511,062) | - | - | (482,214) | - | - | (28,848) |
| 전 기 말 | 3,547,674 | 2,308,105 | (511,062) | 3,547,674 | 2,308,105 | (482,214) | - | 141,998 | (28,848) |
| 당 기 초 | 3,547,674 | 2,308,105 | (511,062) | 3,547,674 | 2,308,105 | (482,214) | - | 141,998 | (28,848)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131,449 | - | - | 73,507 | - | - | 57,942 |
| 당 기 말 | 3,547,674 | 2,308,105 | (379,613) | 3,547,674 | 2,308,105 | (408,707) | - | 141,998 | 29,094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본재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말 | | 전기말 | |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 정기예금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토지 | 3,447,674 | 평가하지 않음 | 3,447,674 | 평가하지 않음 |
| 합계 | 3,547,674 | | 3,547,674 | |

유형자산은 취득 이후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사업수익

당기 중 보조금 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시비보조금수익 | 국비보조금수익 | 기부금수익 | 합 계 |
|---------|------------|-----------|---------|------------|
| 수령액 | 26,703,077 | 4,774,241 | 949,000 | 32,426,318 |
| 수익인식 | 25,164,974 | 4,773,635 | 944,145 | 30,882,754 |
| 반납금(주1) | 1,538,103 | 606 | 4,855 | 1,543,565 |

(주1) 부산광역시 및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미사용한 금액으로 각 각 부산광역시 및 대한체육회 등으로 반납될 보조금입니다. 당기말 현재 반납예정보조금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사업비용

사업비용의 성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 기 | | | 전 기 | | |
|----------|------------|------------|---------|------------|------------|---------|
| | 통 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 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I 사업수행비용 | 28,587,821 | 28,039,850 | 547,972 | 15,219,540 | 15,012,624 | 206,916 |
| (1) 분배비용 | 7,270,416 | 7,270,416 | - | 3,146,265 | 3,146,265 | - |
| 민간경상이전비 | 6,392,719 | 6,392,719 | - | 2,880,765 | 2,880,765 | - |
| 장학금 | 877,697 | 877,697 | - | 265,500 | 265,500 | - |
| (2) 인력비용 | 14,381,166 | 14,105,018 | 276,148 | 9,233,080 | 9,130,638 | 102,442 |
| 직원급여 | 9,186,484 | 9,072,122 | 114,361 | 4,930,077 | 4,873,279 | 56,799 |
| 제수당 | 4,368,076 | 4,216,236 | 151,840 | 3,640,586 | 3,600,216 | 40,370 |
| 퇴직급여 | 575,230 | 565,699 | 9,530 | 564,627 | 560,179 | 4,448 |
| 복리후생비 | 248,267 | 247,850 | 417 | 95,197 | 94,670 | 527 |
| 교육훈련비 | 3,110 | 3,110 | - | 2,593 | 2,295 | 298 |
| (3) 시설비용 | 930,492 | 848,007 | 82,484 | 461,546 | 402,959 | 58,587 |
| 수도광열비 | 60,266 | 20,230 | 40,036 | 31,491 | 8,455 | 23,036 |
| 전력비 | 65,516 | 50,521 | 14,994 | 25,089 | 25,089 | - |
| 감가상각비 | 90,358 | 88,480 | 1,878 | 59,059 | 57,808 | 1,252 |
| 지급입차료 | 324,922 | 324,922 | - | 136,125 | 136,125 | - |

| 구 분 | 당 기 | | | 전 기 | | |
|-----------|-----------|-----------|---------|-----------|-----------|--------|
| | 통 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통 합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
| 수선비 | 34,274 | 20,761 | 13,513 | 5,780 | 1,630 | 4,150 |
| 건물관리비 | 309,547 | 297,485 | 12,062 | 204,001 | 173,852 | 30,149 |
| 하자보수충당금전입 | 45,609 | 45,609 | - | - | - | - |
| (4) 기타비용 | 6,005,748 | 5,816,408 | 189,339 | 2,378,649 | 2,332,762 | 45,887 |
| 여비교통비 | 1,550,244 | 1,550,244 | - | 304,888 | 304,808 | 80 |
| 접대비 | 120 | 120 | - | 250 | 250 | - |
| 통신비 | 20,236 | 13,352 | 6,884 | 23,367 | 19,375 | 3,992 |
| 세금과공과 | 929,529 | 910,508 | 19,021 | 567,398 | 564,790 | 2,608 |
| 보험료 | 43,584 | 43,584 | - | 15,235 | 15,235 | - |
| 차량유지비 | 22,884 | 22,884 | - | 8,793 | 8,793 | - |
| 운반비 | 23,291 | 17,691 | 5,600 | 10,290 | 10,290 | - |
| 도서인쇄비 | 127,383 | 126,888 | 495 | 136,724 | 134,949 | 1,775 |
| 회의비 | 64,250 | 63,650 | 600 | 19,165 | 18,985 | 180 |
| 소모품비 | 781,021 | 751,351 | 29,670 | 627,322 | 617,015 | 10,306 |
| 지급수수료 | 475,961 | 363,866 | 112,096 | 263,918 | 250,704 | 13,214 |
| 광고선전비 | 16,999 | 14,677 | 2,322 | 88,350 | 88,350 | - |
| 기밀비 | 281,800 | 281,800 | - | 10,400 | 10,400 | - |
| 잡비 | 12,651 | - | 12,651 | 13,731 | - | 13,731 |
| 피복비 | 780,731 | 780,731 | - | 267,818 | 267,818 | - |
| 행사비 | 841,115 | 841,115 | - | - | - | - |
| 포상금 | 31,500 | 31,500 | - | 21,000 | 21,000 | - |
| 공익목적충당금전입 | 2,448 | 2,448 | - | - | - | - |
| Ⅱ 일반관리비용 | 2,907,209 | 2,907,209 | - | 1,811,578 | 1,811,578 | - |
| (1) 인력비용 | 2,585,819 | 2,585,819 | - | 1,631,172 | 1,631,172 | - |
| 급여 | 2,391,825 | 2,391,825 | - | 1,308,219 | 1,308,219 | - |
| 퇴직급여 | 124,666 | 124,666 | - | 259,639 | 259,639 | - |
| 복리후생비 | 65,209 | 65,209 | - | 62,835 | 62,835 | - |
| 교육훈련비 | 4,120 | 4,120 | - | 479 | 479 | - |
| (2) 시설비용 | 8,757 | 8,757 | - | 5,245 | 5,245 | - |
| 감가상각비 | 8,757 | 8,757 | - | 5,245 | 5,245 | - |
| (3) 기타비용 | 312,633 | 312,633 | - | 175,161 | 175,161 | - |
| 여비교통비 | 30,425 | 30,425 | - | 5,344 | 5,344 | - |
| 세금과공과 | 196,927 | 196,927 | - | 120,355 | 120,355 | - |
| 수선비 | 1,410 | 1,410 | - | 606 | 606 | - |
| 도서인쇄비 | 6,523 | 6,523 | - | 1,879 | 1,879 | - |
| 회의비 | 16,660 | 16,660 | - | 643 | 643 | - |
| 소모품비 | 47,565 | 47,565 | - | 27,898 | 27,898 | - |
| 지급수수료 | 13,124 | 13,124 | - | 18,437 | 18,437 | - |

14. 법인세비용

체육회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전기에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으며 당기의 법인세 해당액은 3,666천원입니다.

15. 내부거래제거

통합재무제표 작성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제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공익목적사업부문 | | 기타사업부문 |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수익사업출연금 | 141,998 | 보통재산 | 141,998 |

<전기>

(단위 : 천원)

| 공익목적사업부문 | | 기타사업부문 |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수익사업출연금 | 141,998 | 보통재산 | 141,998 |
| 단기차입금 | 20,125 | 단기대여금 | 20,125 |

세입세출결산총괄표

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 당초예산액 (A) | 추경예산액 (B) | 예산현액 (C=A+B) | 세 입 액 (D) | 차 액 (E=D-C) |
|-----------|----------------|--------------|-----------------|----------------|----------------|
| 합 계 | 35,840,000,000 | 866,000,330 | 36,706,000,330 | 36,124,094,960 | △ 581,905,370 |
| 시 보 조 금 | 26,710,302,000 | - | 26,710,302,000 | 26,704,572,337 | △ 5,729,663 |
| 국 고 보 조 금 | 5,288,228,000 | 76,499,000 | 5,364,727,000 | 4,774,241,495 | △ 590,485,505 |
| 후원/격려금 | 525,000,000 | 23,500,000 | 548,500,000 | 465,500,000 | △ 83,000,000 |
| 체육회관수입 | 380,000,000 | 35,000,000 | 415,000,000 | 450,653,900 | 35,653,900 |
| 생활체육교실수입 | 50,000,000 | 51,968,438 | 101,968,438 | 144,199,280 | 42,230,842 |
| 부산스포츠클럽수입 | 22,000,000 | △ 3,153,651 | 18,846,349 | 18,075,000 | △ 771,349 |
| 기 타 수 입 | 533,470,000 | △ 7,058,300 | 526,411,700 | 546,608,105 | 20,196,405 |
| 이 월 금 | 2,331,000,000 | 689,244,843 | 3,020,244,843 | 3,020,244,843 | - |

2. 세출결산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 당초예산액 (A) | 추경예산액 (B) | 예산현액 (C=A+B) | 집 행 액 (D) | 잔 액 (E=C-D) |
|-----------|----------------|--------------|-----------------|----------------|----------------|
| 합 계 | 35,840,000,000 | 866,000,330 | 36,706,000,330 | 34,315,817,219 | 2,390,183,111 |
| 시 비 지원 사업 | 26,732,772,000 | - | 26,732,772,000 | 25,184,611,262 | 1,548,160,738 |
| 국 비 지원 사업 | 5,265,758,000 | 76,499,000 | 5,342,257,000 | 4,756,026,340 | 586,230,660 |
| 자 체 지원 사업 | 1,521,470,000 | 225,183,390 | 1,746,653,390 | 1,550,861,677 | 195,791,713 |
| 예비비 및 기타 | 2,320,000,000 | 564,317,940 | 2,884,317,940 | 2,824,317,940 | 60,000,000 |

* 세입세출결산표는 체육회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세입과 세출을 집계한 것으로 참고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 | | | |
|-----------|---------------|----|---------------|----|
| 지방보조사업자 | 부산광역시체육회 | |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 |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 | | | | | 전산감사· 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 |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 | 합계 | | |
|-------------------|------------------------|---|------------------|----|-------------|-----|-------------|----|---------------------------|---|-----------------------|---|----|-----|----|
| | | |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 | 등록 공인회계사 | | 수습 공인회계사 | | | | | | | |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 | | | 당기 |
| 투입 인원수 | - | - | 1 | 1 | 2 | 2 | - | 1 | - | - | - | - | 4 | 4 | |
| 투입 시간 | 분·반기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8 | 8 | 112 | 16 | - | 32 | - | - | - | - | 120 | 56 |
| | 합계 | - | - | 8 | 8 | 112 | 16 | - | 32 | - | - | - | - | 120 | 56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구 분 | 내 역 | | | | | | | |
|-------------------|-------------------------|---|------------|--------|---|-----|-------|--|
| |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시기 | 2022.11.01 | | | | 1 | 일 |
| 주요내용 | | 감사경험, 체육회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의 결정 | | | | | | |
| 현장감사 주요내용 | 수행시기 | | | 투입인원 | | | |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
| | | | | 상주 | | 비상주 | | |
| | 2023.04.05 ~ 2023.04.06 | 2 | 일 | 2 | 명 | 1 | 명 | 중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하여 질문과 분석적절차, 입증감사절차수행, 감사결과 요약 |
|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실사(입회)시기 | - |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 | - | | | | | | |
| | 실사(입회)대상 | - | | | | | | |
|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실사(입회)시기 | - |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 | - | | | | | | |
| | 실사(입회)대상 | - | | | | | | |
| 외부조회 | 금융거래조회 | 0 | | 채권채무조회 | | - | 변호사조회 | - |
| | 기타조회 | - | | | | | |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 커뮤니케이션 횟수 | 1 | 회 | | | | | |
| | 수행시기 | 2023.04.06 | | | | | | |
| 외부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 | - | | | | | | |
| | 수행시기 | - | | | | | - | 일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3년 04월 06일 | 회계담당자 | 구두 | 감사결과 보고 |

5. 보고자

| | | | | | | |
|-----|---------------|------|----|-------|----|-----|
| 담당자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4233 | 직위 | 공인회계사 | 성명 | 임태영 |
| 연락처 | 051-807-4900 | | | | | |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 | | | | |
|-----------|---------------|----|---------------|----|
| 회 사 명 | | | | |
| 감사대상 사업연도 | 2020년 01월 01일 |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까지 |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 감사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 |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 | | | | | 전산감사· 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 |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 | 합계 | | |
|-------------------|------------------------|--|------------------|----|-------------|----|-------------|----|---------------------------|--|-----------------------|--|----|--|----|
| | | |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 | 등록 공인회계사 | | 수습 공인회계사 | | | | | | | | |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 | | | 당기 |
| 투입 인원수 | | | | | | | | | | | | | | | |
| 투입 시간 | 분·반기검토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 구 분 | 내 역 | | | | | | |
|------------------|--------------------|--------|---|-----|-------|--------------|---|
| |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시기 | | | | | |
| 주요내용 | | | | | | | |
| 현장감사 주요내용 | 수행시기 | 투입인원 | | | |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 |
| | | 상주 | | 비상주 | | | |
| | 일 | 명 | 명 | 명 | | | |
| | 일 | 명 | 명 | 명 | | | |
| 재고자산실사(입회) | 실사(입회)시기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 | | | | | | |
| | 실사(입회)대상 | | | | | | |
| 금융자산실사(입회) | 실사(입회)시기 | | | | | | 일 |
| | 실사(입회)장소 | | | | | | |
| | 실사(입회)대상 | | | | | | |
| 외부조회 | 금융거래조회 | 채권채무조회 | | | 변호사조회 | | |
| | 기타조회 | | | | | | |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 횟수 | | | | | | 회 |
| | 수행시기 | | | | | | |
| 외부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 | | | | | | |
| | 수행시기 | - | | | - | | 일 |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0년 12월 04일 | | | |
| 2 | 2021년 03월 26일 | | | |